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추가〉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88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6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28인

(2) 제 안 일 : 2025. 11. 4.

(3) 회 부 일 : 2025. 11.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 ----- ----- ----- ----- -----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것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상급종합병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지정하고 있음.

- 2025년 현재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

연번	진료권역	응급의료센터 구분	기관명	비고
1	서울권 (14)	권역	서울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2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4			고대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5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6		지역	중앙대학교병원	
7			강북삼성병원	
8			경희대학교병원	
9			연대세브란스병원	전문응급의료센터
10			서울성모병원	
11			건국대학교병원	
12			강남세브란스병원	
13			서울아산병원	전문응급의료센터
14			삼성서울병원	
15	경기 서북부권 (4)	권역	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16			인하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17			순천향대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8		지역	인천성모병원	
19	경기 남부권 (5)	권역	고대안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0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21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3		지역	성빈센트병원	

연번	진료권역	응급의료센터 구분	기관명	비고
24	강원권(2)	권역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25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6	충북권(1)	권역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27	충남권(3)	권역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8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29			건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0	전북권(2)	권역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1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32	전남권(3)	권역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33			조선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4		지역	화순전남대학교병원	
35	경북권(5)	권역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36			영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7		지역	계명대동산병원	
3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39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전문응급의료센터
40	경남 동부권(6)	권역	동아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41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4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43		지역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44			고신대학교병원	
45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46	경남 서부권(2)	권역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47			삼성창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 3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상급종합병원 부재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법 제3조의41)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요건은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④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4가지이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조의4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

「의료법」 제3조의4 제1항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진료기능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다음 진료과목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을 둘 것 1) 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2) 선택진료과목(18):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 1)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호 교육기능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받았을 것											
제3호 인력·시설· 장비 등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을 둘 것 나. 가목의 입원환자 수는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을 사용한다.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및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았을 것 마.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출 것 바.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병문안객의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한 운영체계,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등을 갖출 것 사.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인력 및 중환자실병상,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제4호 질병군별 (疾病群別) 환자의 구성비율	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다음 표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34 이상이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12 이하일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분류 기준</th><th>질병의 종류</th></tr> </thead> <tbody> <tr> <td>전문진료 질병군</td><td>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td><td rowspan="3">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td></tr> <tr> <td>일반진료 질병군</td><td>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td></tr> <tr> <td>단순진료 질병군</td><td>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지 아닌 질병, 그 밖에 진료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td></tr> </tbody> </table> 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7 이하일 것 다. 중증질환 진료 및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回送) 체계를 유도하고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진료실적을 갖출 것 라. 가목의 입원환자 수와 나목의 외래환자 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분류 기준	질병의 종류	전문진료 질병군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일반진료 질병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	단순진료 질병군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지 아닌 질병, 그 밖에 진료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구분	분류 기준	질병의 종류										
전문진료 질병군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일반진료 질병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											
단순진료 질병군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지 아닌 질병, 그 밖에 진료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규칙에서 추가한 사항: 의료서비스 수준	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나.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항목에 대한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최근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할 것 비고: 제3호사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의 기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

□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5호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²⁾

□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응급실공급을 확보하는 한편 응급환자의 추가적인 전원 및 이송에 따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중 하나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을 정하고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추가하고자 함. 그런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선후 관계에 혼란이 발생함.

-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도 지정 기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규정할 경우 그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대상 중 ‘상급종합병원’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³⁾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삭제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 포함되므로(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함), 상급종합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재지정에 관하여 지정 관련 규정을 준용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

□ 둘째,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추가하고 있어 현행 시행규칙의 요건인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과 일부 차이가 있음.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법령에 의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어 있으므로,⁴⁾ 핵심적인 차이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포함 여부임.

-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 또는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나, 그렇지 아니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5]에 의해 41개소로 제한되어 있고(예외적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지정 가능), 권역외상센터는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관계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⁵⁾ 이는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센터의 지나친 분산을 방지하여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제13조제1항 관련) >

번호	응급의료 권역	응급의료권역 구성	권역응급 의료센터 적정개소수
1	서울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
2	서울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2
3	서울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	2
4	서울동남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2
5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3
6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2
7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부천시, 시흥시	3
8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2
9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무주군)	2
10	울산	울산광역시	1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 및 의료자원 공급, 응급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6.>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100만명당 1개소
2. 도 및 특별자치도: 인구 50만명당 1개소 (이하 생략)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번호	응급의료 권역	응급의료권역 구성	권역응급 의료센터 적정개소수
11	경기서북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	1
12	경기동북	의정부시, 철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1
13	경기서남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2
14	경기동남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2
15	강원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1
16	강원춘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	1
17	원주충주	강원(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1
18	충남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1
19	충북청주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1
20	전북익산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1
21	전북전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
22	전남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1
23	전남순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	1
24	경북안동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1
25	경북구미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1
26	경북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1
27	경남창원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1
28	경남진주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1
29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1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개소, 권역외상센터는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현황 >

연번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비고
1	서울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상급종합병원
2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3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4	서울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암병원	상급종합병원
5	서울	한양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6	서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7	서울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8	경기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상급종합병원
9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0	경기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상급종합병원
11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2	경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상급종합병원
13	경기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14	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15	경기	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16	경기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17	인천	길의료재단 길병원	상급종합병원
18	인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상급종합병원
19	강원	강릉아산병원	상급종합병원
20	강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상급종합병원
21	강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22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3	충남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상급종합병원
24	충남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25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6	대전	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7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8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9	전남	목포한국병원	
30	전남	성가롤로병원	
31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32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33	경북	의료법인안동병원	
34	경북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35	경북	포항성모병원	
36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37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38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39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40	경남	성균관대학삼성장원병원	상급종합병원
41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42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43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44	제주	제주한라병원	

<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

연번	지역	권역외상센터	비고
1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2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	경기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4	인천	길의료재단 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5	강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6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7	충남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8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9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0	전남	목포한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1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2	경북	의료법인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3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4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5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16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7	제주	제주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또한 전문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소아분야 12개소만 지정되어 있음.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현황 >

연번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비고
1	서울	서울아산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2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5	경기	분당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6	인천	길의료재단 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7	인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8	세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9	충남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0	전북	전주예수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11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12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또는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하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33개소로,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지역응급의료센터로만 지정되어 있는 14개소가 상급종합병원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됨.

<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 중 개정안 요건 미충족 병원 >

연번	시·도	기관명
1	서울특별시	건국대학교병원
2		경희대학교병원
3		삼성서울병원
4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5		강북삼성병원
6		중앙대학교병원
7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8	경기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9	인천광역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10	전라남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1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3	부산광역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4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따라서 개정안의 요건이 추가될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만 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발생함. 이는 개정안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분야 예시를 현행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서 “심장·심혈관·뇌혈관질환자, 소아환자, 화상환자, 독극물중독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⁶⁾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는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점, 단기간에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역시 응급의료체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⁷⁾에서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의 요건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포함하는 방안⁸⁾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참고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1개소,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인구 50만명당 1개소를 지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기준 전국 13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한편,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개정법률 시행 시점에 개정안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위에 관하여 부칙으로 경과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의안번호 제2213901호 김윤의원 대표발의안(2025.11.4. 발의) 신구조문대비표 중 일부 발췌

현 행	개정안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u>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 ----- <u>심장·심혈관·뇌혈관질환자, 소아환자, 화상환자, 독극물중독환자 및 정신질환자</u> ----- ----- ----- -----.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의료전달체계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고,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중 유관 지표를 지정평가 기준 내 반영한 바 있음 (소아응급환자분담률(가중치 2%), 최종치료제공률(가중치 2%), 중증응급환자분담률(가중치 2%)).
-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대한치과의사협회 (찬성)

- 개정안 찬성하나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 기능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대한병원협회 (반대)

- 1, 2차 의료기관의 전원의뢰를 수용하는 3차 의료기관으로서 상급종합병원(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수행)과 응급의료정책 수행과정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수행)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분담)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외상, 심혈관, 화상, 소아 등의 중증 필수 분야로 전문의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이 자칫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전문의 쏠림 현상 심화로 이어져 비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 전문의 이탈로 이어질 위험성이 큼.

- 개정안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는 권역별로 지정 가능한 개소수가 정해져 있는 제한된 제도임. 비수도권이나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은 이러한 센터를 지정받기 어려워 같은 수준의 중증진료 역량을 갖추더라도 행정적 배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의 지역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그 지정시기와 평가시점이 달라 특정 시점에 응급의료기관 지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자격까지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상급종합병원이 신속한 최종치료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응급 중증환자 진료체계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